**혼 인 무 효 소 장**

원         고 : 이혼해

주         소 :

등 록 기 준 지:

전         화 **:**

피         고 : 헤어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전         화 :

혼인무효의 소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년 04월 03일 서울시시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존경하는 판사님! 모든 자신의 과거를 속인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어 혼인무효의 소를 청구 드립니다.

2. 원고는 좋은 2012년 1월 00일 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싱가폴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어머님은 칭다오 대학교수 출신이며 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태국, 홍콩, 말레시아등 많은 해외여행을 다닌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 했습니다.

3. 원고는 피고의 좋은 집안배경과 부모님의 학식수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2012년 3월 1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2012

3. 원고는 2012년 02월 00일부터 동년 05월 00일까지 혼인 차 4차례에 걸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2012년 05월 00일부터 약 3일 동안을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신부에게 3일간이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되지 아니하여, 이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고 큰 문제가 있는 여성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갑제2호증)

4. 원고는 피고를 처음 만날 때,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당신과 행복하게 잘살고 싶다고 고백하며 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알려주었습니다.(갑제3호증)

5.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입국 전까지 신부 측에 핸드백, 가방, 화장품 등의 구매비용과 피고 가족들의 의류비용, 의약품비용 및 시계, 전자제품 등 생활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선물비용과 물품대 등 직접적으로 건네준 돈만 대략[       ]만원이나 됩니다.(갑제5호증의 3 내지 5)

6. 그런데도, 피고는 지속적으로 돈과 선물 등을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잘못된 심성을 가진 피고의 가족들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선물과 돈을 요구 하였습니다. 원고는 가난하여 그러겠지 생각하고 잘 살아보려고 이해하며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의 요구에 응하여 많은 돈과 선물을 수십 차례에 걸쳐 주게 되었습니다. (갑제5호증의 1 내지 2)

7. 그런데, 어찌된 사람들인지 돈과 선물 요구가 끝이 없어,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와 미처 살아보기도 전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갑제4호증)

8.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족들에게 짧은 기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많은 돈과 선물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신부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베트남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집을 지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피고와 피고가족들은 초청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한국에 오면 일을 하여 돈을 벌어 베트남에 송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갑제6호증)

9. 원고는 이러한 부당하고 파렴치한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고, 이런 여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집안을 거덜 내고 도망갈 것이 걱정되어 피고를 소개한 소개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소개업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만 하고 있어, 이에 원고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피고와 피고가족들을 만나 강력하게 항의를 함과 동시에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부탁하였습니다.(갑제6호증)

10.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베트남에 집을 지어주던가 한국에 가서 일하여 돈을 벌게 하여 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식의 말만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혼인의 진심이나 진정성은 없고 원고를 이용하여 돈이나 갈취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사기결혼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원고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 국제결혼을 했다가 피고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아 힘들어 하는 피해자입니다.(갑제6호증)

11. 지금은 피고도 소개업자도 수십 차례의 전화통화 시도를 하였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소식도 없습니다. 원고를 걱정했던 저의 부모님들도 충격을 받으셔서 속상해 하시고 원고는 이제 부모님과 친지 분들을 뵐 면목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12. 판사님 원고는 이제 사람도 싫어지고 세상도 싫어 졌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만 보았고 피고는 입국조차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커서 여기저기 몸도 아프며 억울하여 밤에 잠을 청할 수가 없고 식음을 멀리하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13. 존경하는 판사님!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원고는 돈을 갈취하고 물질적 이득만을 취하는 범죄자를 만나 매우 억울합니다. 미처 살아보기도 전에 이런 억지주장을 하는 피고와는 더 이상의 혼인관계가 의미가 없어 혼인무효소를 통하여 신분과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판사님께서 혼인무효 판결로 저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해당입증자료 명칭)

1. 갑제1호증의 2            (해당입증자료 명칭)

1. 갑제2호증                 (해당입증자료 명칭)

1. 갑제3호증                 (해당입증자료 명칭)

1. 갑제4호증                 (해당입증자료 명칭)

1. 갑제5호증의 1            (해당입증자료 명칭)

1. 갑제5호증의 2            (해당입증자료 명칭)

1. 갑제5호증의 3            (해당입증자료 명칭)

1. 갑제5호증의 4            (해당입증자료 명칭)

1. 갑제5호증의 5            (해당입증자료 명칭)

1. 갑제6호증                 (해당입증자료 명칭)

그 밖의 증거자료는 변론 시 수시 제출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기본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피고의 신분증            1통

1. 혼인요건인증서           1통

1. 진술서(원고)              1통

2013년  00월  00일

          위 원고    억울해  (인)